

2000년 공유재산관리계획

의안 번호	219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'99.11.24
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1. 제안사유

충청북도개발사업소의 오창과학산업단지내 중소·벤처기업 임대조성 공단부지 매입, 도민 종합레포츠타운 조성부지 매입, 충청북도소방본부의 청주가경(3)택지개발지구 내 청주서부소방서 부지 매입 및 청사신축에 따른 2000년도 공유재산의 취득사유가 발생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(공유재산의 관리계획) 및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.

2. 주요골자

재산의 취득

<오창과학산업단지내 중소·벤처기업임대공단 조성부지 매입>

- 위 치 : 청원군 오창과학산업단지내
- 규 모 : 부지(공장용지) 99,174m²
- 사업기간 : 2000년 - 2001년 까지
- 사 업 비 : 12,810,000천원(5년간 분할매입)
- 회계구분 :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

〈도민종합레포츠타운 조성부지 매입〉

- 위 치 : 청주시 상당구 주중동 일대(구 종축장 주변)
- 규 모 : 부지(전, 답, 임야 등) 403,306㎡
- 사업기간 : 2000년 - 2004년 까지
- 사 업 비 : 160억원(부지매입비)
- 회계구분 :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

〈청주서부소방서 부지매입 및 청사신축〉

- 위 치 : 청주시 흥덕구 가경(3)택지개발지구내
- 규 모 : 부지(대) 6610.20㎡ 청사 3,316㎡
- 사업기간 : 2000년 - 2001년 까지
- 사 업 비 : 5,453,596천원(부지 2,754,372, 청사 2,699,224)

3. 2000년 공유재산관리계획서 : 『별 첨』

4. 관계법령 : 『별 첨』

-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
-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29조

공유재산관리계획서

2000년도 관리계획 총괄표(7-1)

[회계명 : 일반회계, 특별회계]

(단위 : m², 천원)

구 분		상 반 기			하 반 기			합 계		
		건수	수량	금액	건수	수량	금액	건수	수량	금액
취 득	계	토지			3	509,090	31,564,372	3	509,090	31,564,372
		건물			1	3,316	2,699,224	1	3,316	2,699,224
		기타								
	매입	토지			3	509,090	31,564,372	3	509,090	31,564,372
		건물			1	3,316	2,699,224	1	3,316	2,699,224
		기타								
	교환 취득	토지								
		건물								
		기타								
기타 취득	토지									
	건물									
	기타									
처 분	계	토지								
		건물								
		기타								
	매입	토지								
		건물								
		기타								
	교환 취득	토지								
		건물								
		기타								
	기타 취득	토지								
		건물								
		기타								
사용 및 대부허가	토지									
	건물									
	기타									

2000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 (7-2)

[회계명 : 일반회계, 특별회계]

(단위 : m², 천원)

일련 번호	재 산 표 시			추정가액	취 득 시 기	취 득 사 유	재산취득 소 유 자 주소,성명	비 고
	지목	소 재 지	수 량					
계	토지		509,090	31,564,372				
	건물		3,316	2,699,224				
1	토지	청원군 오창과학산업단지내	99,174	12,810,000	하반기	중소·벤처기업임대 공단 조성부지 매입	충청북도	충청북도 개발사업소
2	토지	청주시 상당구 주중동 (구 종축장 주변)	403,306	16,000,000	"	도민종합 레포츠 타운 조성부지 매입	"	"
3	토지	청주시 흥덕구 가경(3) 택지개발사업지구내	6,610	2,754,372	"	청주서부소방서 부지 매입	"	충청북도 소방본부
	건물	"	3,316	2,699,224	"	청주서부소방서 청사 신축	"	"

관 계 법 령 발 취

[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]

지 방 재 정 법	지 방 재 정 법 시 행 령
<p>제77조(공유재산의관리계획)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</p> <p>②제1항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/p>	<p>제84조(공유재산의관리계획)①법 제77조의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의 취득·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것으로 본다.</p> <p>②법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중요재산의 취득·처분으로 한다. 이 경우 토지에 있어서는 제2호에 규정된 면적 이하 일지라도 제1호에 규정된 금액에 해당될 때에는 이를 포함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1건당 예정가격이 취득의 경우에는 5억원이상(시·군·자치구의 경우에는 1억원이상), 처분의 경우에는 2억5천만원이상(시·군·자치구의 경우에는 1억원이상). 이 경우 예정가격의 기준은 토지에 있어서는 공시지가를 건물 및 기타재산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. 2. 토지에 있어서는 취득의 경우에는 1건당 6천제곱미터이상(시·군·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이상), 처분의 경우에는 1건당 3천제곱미터 이상(시·군·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이상)

[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 및 동시행규칙]

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	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
<p>제37조(공유재산관리계획)①법 제77조및 영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 계획은 도지사가 익년도 예산편성전 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의 취득·처분을 하여야 한다. 다만 연도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의 변동이 있을시는 변경계획을 작성 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의결을 받아야 한다.</p>	<p>제29조(공유재산관리계획서등)①조례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서 및 공유재산매매계약서등의 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1.공유재산관리계획서(별지 13호서식)2 ~ 5호 생략